

輸出 및 研究開發 (技術開發·人力開發포함) 投資에 對한 租稅支援制度



明進合同會計事務所
公認會計士
朴宰弘

I. 머리말

現行 우리나라의 稅法은 政府의 先進工業立國政策의 目標를 達成하기 爲해 企業의 진취적인 經營 활동을 유도할 目的으로 여러가지 支援制度를 두고 있는 바, 그중에서 특히 輸出등 外貨獲得事業에 對한 조세지원제도와 研究開發(技術開發 및 人力開發)에 對한 조세지원제도를 要約 說明하기로 한다.

II. 輸出등 外貨獲得事業에 對한 租稅支援 制度

1.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

수출하는 財貨 및 國外에서 제공하는 用役에 對해서는 附加價値稅에 있어 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附加價値稅法第11條)

수출은 內國의 物品을 外國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하는 財貨에는 사업자가 內國信用狀과 對外貿易法에서 정하는 購買承認書 또는 輸入原資材購買承認書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國內에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外國換銀行에서 원貨로 받는 것도 零의 稅率을 適用받는다.

또한 國內에 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이 지정한 者에게 國內에서 財貨 또는 用役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으로부터 外國換銀行을 통하여 원貨로 받는 경우에도 零의 稅率을 適用하며 (附加通則 3-5-1...11)

·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零의 稅率을 適用한다. (附加通則 3-5-2...11)

① 國外的 非居住者 또는 外國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外國換銀行에 매각하는 경우

② 國內사업장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當該 外國법인의 國內대리점을 통하여 원貨로 받는 경우에도 零의 稅率을 適用받는다. (국심86부 1968 : 87. 1. 12)

그러나 위와 같은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零의 稅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加 22601-935 : 87. 5. 8)

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輸出財貨賃加工用役 (輸出財貨染色賃加工用役 포함) 및 內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도 零의 稅率을 適用 받는다.

여기에서 수출사업자라 함은 수출업자 (輸出業者로서 다른 輸出업자에게 內國信用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외에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代行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며 內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附加通則 3-6-1...11) 그리고 수출업자와 직접 都給契約에 의하여 輸出財貨의 部分品, 半製品 및 包裝財를 임가공하는 用役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범으로 보며 (附加通則 3-6-1 2...11) 수출금융규정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없이 內國信用狀을 開設할 수 있는 備蓄限度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

용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도 零의 稅率을 적용한다. (附加通則3-6-3...11)

2. 産業設備輸出事業에 대한 소득공제

대외무역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수출을 계약하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을 營爲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外貨收入金額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100을 한도로 한다) 을 控除한다. (租減法제26條)

3. 特別償却認定

제조업, 광업,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서

①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外貨獲得事業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特別償却할 수 있다. (租減法第25條)

4. 海外市場開拓費의 損金算入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租減法第22條, 第26條第1項 사업 및 同令제19조제1항 해당사업) 이 國內 및 國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은 손금인정된다. (法人稅法第18條의2 第4項 및 同令第44條의 5項)

國內에서 해외 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① 해외고객의 항공승차권사본 ② 호텔숙박영수증 ③ 기타 접대비 영수증 등 각 영수증에 해외고객의 서명을 받고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海外市場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허가를 받은 법인과 ②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技術用役業의 등록을 한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범위내에서 海外市場開

拓準備金を設定하고 同額만큼 損費를 計上할 수 있다.

가. 일반수출의 경우는 外貨收入金額의 1/100 나. 특수수출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의 “가”의 일반수출의 한도액에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特殊輸出은 ①선박 및 기계의 수출사업 ②특수지역 수출사업(우리나라 총수출실적의 10%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을 말함) ③수출역조지역 및 국가에 대한 수출 또는 用役事業 ④中小企業의 輸出事業등을 의미한다. (위 네가지 중 중복되는 경우는 한가지만 선택 적용하여야 한다. (租減法第23條, 同令第18條, 20條, 21條, 22條 參照)

6. 輸出損失準備金の 損金算入

輸出 또는 관광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하고 同額을 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다. (租減法第22條 및 同令第19, 20, 21, 22各條 參照)

일반수출인 경우는 외화수입금액과 외화획득에 준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와 외화획득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특수수출(海外市場開拓準備金の 경우 延拂輸出事業이 추가됨)인 경우는 당해 외화수입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금액을 일반수출의 한도액에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출손실준비금 및 상기 5항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한 수입은 租減法の 規定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年次로 還入하여 益金處理하여야 한다.

7. 特別消費稅의 면제

수출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가 免除된다(特消稅法第15條) 위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特別消費稅免除申請書를 제출하여 所관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當該物品의 製造者와 수출하는자가 연기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으로서 소정의 용도에 供한 사실을 기한내에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한내 당해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特別消費稅를 징수한다.

그러나 위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特別消費稅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同法令第19, 19의 2, 20, 21各條 參照)

8. 取得稅 및 財産稅의 非課稅

임대차방식에 의한 延拂輸出船舶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船舶제조사 名義로 등기하는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따라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차 방식에 의한 延拂輸出契約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地方稅法第110조第1項第8호, 同法제128條 第10항, 同法제184條의 2 제2항8호 各各 參照)

III. 技術 및 人力開發과 研究費支出에 對한 租稅支援制度

過去の 設備投資中心의 租稅支援制度를 改善하여 現行稅法에서는 技術開發에 의한 生産性向上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支援制度를 두고 있다.

1. 技術開發準備金の 損金算入(租減法第16條)

①製造業 ②鑛業 ③建設業 ④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⑤전자계산조직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事業 ⑥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研究開發事業 ⑦金融·保險業 등의 內國法人은 技術의 開發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범위내에서 技術開發準備金を 損金으로 計上할 수 있다.

①일반법인인 수입금액의 1.5% 혹은 소득금액의 20%중 많은 금액을 限度金額으로 準備金を 設定하고 同額을 損費 計上할 수 있다.

②技術集約的産業(租減法施行令別表4의 産業)에 대해서는 收入金額의 2%와 소득금액의 30%중

많은 금액을 限度로 設定할 수 있으며

③中小企業法人인 경우는 위①항 혹은 ②항의 한도액+500萬원이 그 限度額이다. 위에서 소득금액이란 稅務會計上 所得金額을 말하며 稅務調整의 對象이 되는 當該 技術開發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技術開發準備金을 계상한 法人이 재료, 제품, 기계장치 또는 工程을 改善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등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비용으로서 租減法令別表5에 정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技術開發準備金은 다음의 基準에 따라 還入하여야 한다.

1) 一般還入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준비금 잔액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4년이 되는 사업년도 부터 3년간 均等還入하고 其他準備金殘額은 4년이 되는 사업년도에 一時還入한다.

2) 一時還入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에 一時에 還入한다.

①廢業한 때, ②解散한 때, 다만, 合併에 있어서 合併 후 存屬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當該技術開發準備金計定의 金額을 인계한 경우는 除外한다.

技術開發準備金을 益金에 算入할 경우 利子相當 加算稅가 適用된다(利子計算方法은 租減法第13條규정 적용) 또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하는 법인은 課稅標準申請書와 함께 技術開發準備金 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2. 海外市場開拓準備金の 損金算入 (租減法第23條…… II-5參照…생략)

3. 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對한 稅額控除 (租減法第17條)

①제조업 ②광업 ③건설업 ④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⑤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⑥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산업 ⑦금융·보험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者는 ①각사업년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 기술개발용역비 등 租減法別表6의 비용에 대해서는 同費用을 지출한 각 사업년도마다 當該支出金額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控除한다. (租減通則2-5-6…17參照)

②여기에 당해사업년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사업년도開始日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年平均支出額을 초과하는 금액에 對하여는 당해초과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稅額控除額에 加算하여 이를 당해 課稅年度의 소득세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한다.

상기②에서 年平均支出은 다음의 算式으로 計算한다. (租減法令第14條第2項)

當該內國人的 최초 課稅年度開始日로부터 當該課稅年度開始日까지의 期間이 24月 未滿인 경우에는 同期間에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의 合計額을 24月로 換算한 金額을 當該課稅年度開始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間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合計額으로 본다.

$$\frac{\text{當該課稅年度開始日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의 合計額}}{2} \times \frac{\text{當該課稅年度의 月數}}{12}$$

위의 算式에 의해 技術 및 人力開發費 支出에 對한 稅額控除를 받기 위해서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技術 및 人力開發支出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4. 新技術 企業化事業에 對한 投資稅額控除등 (租減法第18條)

1)內國인이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新技術 기업화사업에 직접사용하는 事業用 固定資産에 對한 投資(投資에 對한 建設資金利子

는 포함하지만 中古品에 의한 投資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稅額控除方法

投資金額×3/100(國產機資材의 使用時는 10/100)

위의 金額을 投資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法人稅에서 控除한다.

②特別減價償却費의 損金算入方法

當該事業用固定資産의 取得價額×30/100(國產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50/100)

一般減價償却範圍額에 불구하고 위의 算式에 의한 減價償却費를 追加計上하여 當該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 損金으로 算入한다.

上記에서 言及한 新技術企業化事業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租減法令제15조제1항)

①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②技術開發促進法令第8條의3 第1項各號의 機關 및 非營利法人의 研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研究하는 경우에 限한다)이 開發한 技術의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③實用新法案에 의하여 登錄을 한 新規의 考案을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④技術開發促進法令第8條의2 및 同法施行令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產新技術製品으로 支援하기로 決定한 것을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2) 技術開發을 위한 研究試驗用施設·職業訓練用施設(租減法令第15條第2項 및 同法規則第6條8項參照) 등에 대한 投資에 대하여는 1) 항의 規定을 準用하되 研究試驗施設에 對한 控除率은 8/100(國產機資材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100)로 하고 그 減價償却費는 當該資産의 取得加額의 90/100에 相當하는 金額로 한다.

上記 1), 2) 各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①投資를 開始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計劃書를 ②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技術企業化事業等에 대한 投資稅額控除을 받은 者가 그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當該資産을 處分한 때에는 그 控除받은 稅額에 그 控除받은 事業年度의 課稅표준신고일로부터 當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課稅표준신고일까지 그 公제 받은 세액 100원에 대하여 연18.25%로 計算한 金額을 소득세 또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租減法 제92조의 2)

5. 新技術事業金融會社등의 株式양도차익의 益金不算入(租減法第18條의2)

①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創業者에 出資한 株式이나 持分과

②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新技術事業者에 出資한 株式이나 持分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讓渡差益은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當該事業年度의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6. 技術所得에 對한 소득(法人)세 면제(租減法第19條)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을 설정·등록한 內國인이 當該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當該 技術秘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7. 技術用役事業 所得控除(租減法第20條)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용역업자가 同法第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事業을 開始한 경우 그 사업을 개시한 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까지 當該사업에서 發生한 소득금액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各事業年度의 所得금액에서 控除한다.

8. 所得稅 非課稅(所得稅法第5조제4호 바)

使用인이 직무와 關連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발명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補償金은 非課稅된다.

9. 特別消費稅의 免除 (租減法第75條)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見本品으로써 國內生産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0. 寄附金等に 對한 損金算入 特例 (租減法第49條第1項)

내국인이 公共法人中 ①特定研究機關(共同管理機構포함) ②韓國科學技術院 ③産業研究院 ④韓國정신문화연구원 ⑤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⑥한국에너지연구소 ⑦국토개발연구원 ⑧에너지경제연구원 ⑨생산기술연구원 ⑩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의 법인에 지급한 出捐金과 委託研究費는 當該課稅年度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を 差減한 후의 所得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11. 外國人技術者에 對한 所得稅免除 (租減法第21條)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당해외국인 기술자가 國內에서 最初로 근로를 제공한 달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①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國內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하는 자

③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 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하는 자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사업

④재무부령이 정하는 (租減法規則第7조)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配當所得의 分離課稅 (租減法第5條 제2항 및 제3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를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조합에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가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한 배당소득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당해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10%를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한다.

13. 依制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租減法第6條)

①中小企業投資會社와 新技術事業金融會社에 出資한 株式이나 持分

②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創業者에 出資한 株式이나 持分

③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者에 出資한 株式이나 持分

등을 讓渡하는 경우의 所得稅는 非課稅로 된다.

에너지는 生活의 꽃 절약은 幸福의 꽃